2021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: 2021년 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제연	981021-*****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월별	보수월액(고지금액)		소득월액(납부금액)	
결길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
01월	0	0	0	0
02월	0	0	0	0
03월	0	0	0	0
04월	65,170	7,500	0	0
05월	65,170	7,500	0	0
06월	65,170	7,500	0	0
07월	65,170	7,500	0	0
08월	65,170	7,500	0	0
09월	65,170	7,500	0	0
10월	65,170	7,500	0	0
11월	65,170	7,500	0	0
12월	65,170	7,500	0	0
연말정산	0	0		
합계	586,530	67,500	0	0
총합계				654,030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일련번호: 20220217-58505963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: 2021년 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제연	981021-*****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0	0
02월	0	0
03월	0	0
04월	85,500	0
05월	85,500	0
06월	85,500	0
07월	85,500	0
08월	85,500	0
09월	85,500	0
10월	85,500	0
11월	85,500	0
12월	85,50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	험료 납부금액	0
실업크레딧 납부금액		0
합계	769,500	0
	총합계	769,500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일련번호: 20220217-58505963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: 2021년 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제연	981021-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·	류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0	(수익자)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디비손해보험	주식회사	다이렉트개	인용			
보장성	201-81-45593		220214**	***	981021-*****	박제연	1,622,490
	삼성화재해상보	.험 (주)	무배당 삼성화재 운	2전자보험 안			
보장성	202-81-45617		517062****		981021-*****	박제연	450,306
	라이나생명보	보험(주)	무배당THE건강한치 신	이 사람 V(갱			
보장성	104-81-85	673	302251**	***	981021-*****	박제연	35,550
	현대해상화재보	.험 (주)	하이카 개	인용			
보장성	102-81-32	2035	M2021J**	***	981021-*****	박제연	50,180
	인별합계금액				2,158,526		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일련번호: 20220217-58505963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: 2021년 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제연	981021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0-91-98*	진****	일반	5,500
1-96-17*	김****	일반	7,300
6-17-63*	우****	일반	9,810
6-90-84*	김****	일반	35,500
0-17-26*	은****	일반	3,600
0-19-27*	불****	일반	4,100
6-14-10*	다****	일반	9,600
0-92-38*	연****	일반	4,900
0-57-00*	□ ****	일반	19,100
6-05-00*	소****	일반	3,900
9-29-00*	위****	일반	11,800
6-26-67*	O ****	일반	49,500
2-92-00*	경****	경***** 일반	
4-91-00*	g****	일반	22,5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4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일련번호 : 20220217-58505963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: 2021년 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제연	981021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0-94-00*	서****	일반	53,800
7-96-00*	광****	일반	62,100
8-45-04*	0 ****	일반	31,0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368,31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368,31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5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일련번호 : 20220217-58505963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1년 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제연	981021-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0 년 사용금액 합계	2021 년 사용금액 합계	
1,550	2,862,448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2,862,448	0	0	0	2,862,448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신용카드 214-81-37726		대중교통	0
신용카드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500,160
신용카드	375-88-00197	주식회사 카카오뱅크	일반	0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일반	2,362,288
인별합계금액				2,862,448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 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20217-58505963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6-

2021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1년 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박제연	981021-*****		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0 년 사용금액 합계	2021 년 사용금액 합계		
8,567,255	4,613,458	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,443,660	138,000	0	0	2,581,66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 종 류	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일반	0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63,050
직불카드 등	375-88-00197	주식회사 카카오뱅크	일반	2,380,610
직불카드 등	375-88-00197	주식회사 카카오뱅크	전통시장	138,000
직불카드 등	104-81-83559	주식회사 티머니	일반	0
직불카드 등	104-81-83559	주식회사 티머니	대중교통	0
직불카드 등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일반	0
인별합계금액				2,581,660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20217-58505963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7-

2021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1년 04,05,06,07,08,09,10,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박제연	981021-*****	

■ 전년도, 해당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0년 사용계금액 합계	2021년 사용금액 합계
163,300	2,246,858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,169,058	0	0	0	2,169,058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	종류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
구분	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그에
	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현금영수증 일		0	0	0	109,000	
	일반거래	4,000	0	0	0	2,169,058
		2,040,958	0	15,100	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일련번호 : 20220217-58505963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8-